

[서식 예] 대여금 청구의 소(약정이자 월 3%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돈을 대여하였습니다.
 - (1) 대여금액 ㅇㅇㅇ원
 - (2) 대여일자 20 ○. ○. ○.



- (3) 변 제 기 20 ○ . . .
- (4) 이 자 월 3%
- 2. 피고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이 이 이 및 이에 대한 20 이 이 이 이 . 이 .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4%(이자제 한법상 이자율로 감액)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차용증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- ※ (2)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5%(2014. 7. 15. 법률 제12227호) 시행
 -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·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 제외
 -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(이자의 최고한도)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